기본연구
2017-35

이슈페이퍼

대한민국 명장 학점인정 방안

정향진 ·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2017-35

이슈페이퍼 2017-04

이슈페이퍼

대한민국 명장 학점인정 방안

정향진 ·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민국 명장 학점인정 방안

정향진, 오호영

〈목 차〉

Ⅰ. 서 론 ····· 2
Ⅱ. 대한민국 명장 학점 인정 관련 동향 ····· 7
Ⅲ. FGI 및 결과 분석 ····· 14
Ⅳ. 대한민국 명장 학점 인정(안) ····· 26
참고문헌 ····· 32
Abstract ····· 34
[부록] ····· 35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하여 주요 선행연구와 학점 인정 관련 동향과 이슈를 분석하고, 교육훈련전문가, 자격전문가 및 명장을 대상으로 FGI를 추진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명장에 대한 중장기 학점 인정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및 로드맵 등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대한민국 명장은 심사를 통해 선정, 우대하는 것이므로 학점과의 연계고리를 모색하는 것에 대한 이견도 있었으나,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여타 학점 인정 대상자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공감과 의견을 토대로 큰 틀에서 학점 인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학점인정제도의 운영 틀 안에서 명장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경험학습인정(RPL)'을 중심으로 한 학점 인정(안)을 제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QF의 우산 아래에서 직종별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Industry Skills Council)의 SQF를 적용·인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명장 대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가칭)'의 구성·운영 절차와 필요한 후속 정책과제를 정리, 제시하였다.

- 주제어: 대한민국 명장, 학점은행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경험학습인정(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명장의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경로를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 기관 및 명장 개인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음에도 학점 인정과 학위 취득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해서 학점 인정 및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생의 경우 전수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고, 그 과정의 이수를 전제로 해당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전공일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동일하지 않은 전공일 경우 일반선택 학점 인정). 자격도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구분하여 학점을 배치했는데, 기술사의 경우 출제 기준을 근거로 45학점을 인정한다. 자격 연계 학점은 전공필수로, 연계 전공이 없는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교양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 명장의 경우 명장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경력 등을 평가·인정하고,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과 학위 수여는 비교, 평가 및 인정할 수 있는 전수교육과정이나 자격 출제 기준 등의 인정 기준이 없어 관련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거 법령 중 학점은행제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세부 내용에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학력 취득은 곧 학위 수여를 말하는데, 학위의 의미는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받은 학업 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정 수준의 학술 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각각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제50조제1항). 「고등교육법」과 연계하여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 단 학점은행제에

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 확인하여 학습자 등록 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http://www.cb.or.kr/creditbank/eduIntro/eduIntro4_1.do).

명장제도는 대한민국 명장을 선정, 우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숙련기술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함은 물론 능력위주의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숙련기술자 스스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업이 숙련기술을 존중하는 풍토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1987년부터 2017년 현재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627호까지 선정되어 있다. 사업 근거 법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이며, 매년 35명 이내로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였으며, 접수일 현재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첫 번째 요건은 숙련기술의 보유 정도가 높은 자로 신청 제외자에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 자가 명시된 것을 보면 명장 선정의 우선 요건은 숙련기술로 볼 수 있다(http://www.hrdkorea.or.kr/3/6/2/1). 명장의 지원 자격은 15년 이상이나, 실제 25년 이상 경력이 73.4%이며,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89.6% 중 기능장이 45.2%로 나타났다. 명장의 특허 등록은 전체의 46.1%, 실용신안 및 디자인 등록은 전체의 36.5%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사내 공정 및 품질 개선 실적 80.9%, 서적 및 논문 실적 49.6%, 관련 매뉴얼 개발도 60.0%로 조사되었다(정원호, 2016).

2015년부터 2017년 5월 현재 학위, 자격, 현장경력, 직업훈련을 포함한 평생학습 등 개인의 모든 학습경험과 근로경험의 상호 연계 인정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KQF 구축의 필요성, 즉 교육훈련 이수, 자격 취득, 현장경험 등 다양한 학습 및 근로 경험에 대한 인정을 통해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시간과 비용의 중복을 줄이고, 경력개발 사다리를 가시화하며, 이를 개인과 기업의 능력개발과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단계이다. 2017년 말까지 KQF 매뉴얼을 개발 완료하고, 2018년에는 부분적으로 특정 SQF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작동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KQF 차원에서 명장에 대한 경험학습인정(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이 구체화되어 작동 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 학점인정원의 학점 인정 관련 세부 학점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명장 선정 직종의 적합성 분석을 통해 직종 개편, 통합, 폐지, 신규 등을 검토하고, 특히 NCS와 명장 직종 간의 연계를 모색하여 명장의 산업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향후 KQF 기반의 RPL 등 학점 인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현재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은 KQF 상의 '경험학습인정(RPL)'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서 검증 가능한 현장경력, 평생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다양한 교육훈련, 입상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현재 RPL과 관련한 법으로는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평생교육법」 등이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KQF의 우산 아래 직종별 ISC가 주도하는 SQF(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의 수준 판정에 따른 연계 학점 및 학위 인정 방안 마련이다. 별도로 명장의 학위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능력의 학력에의 종속'을 야기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능력중심사회 구축 방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KQF가 구축되지 않았고 직업훈련, 자격 등 다른 제도들이 학점인정제를 통하여 학점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들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명장의 학점인정 방안을 단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운영 방안은 추후 KQF 주도로 시행할 때와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처, 기관의 담당자 및 전문가와 사전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 자료 및 사이트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현재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 마련 시 고려가 필요한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학점인정제 진입 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취득 이후에 한해 인정이 가능하다는 현재의 규정이다. 이는 명장의 경우 중졸 이하가 21.3%를 차지하고 있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ORP연구소, 2016).

둘째, 명장 선정 기준은 현장경력 중심의 RPL임에도 이와 연계한 학점 인정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교양학점 인정의 문제도 타당한 이수 및 인정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KQF의 우산 속에서 직종별 SQF를 적용, 심의하는 방안, 즉 명장 선정 시 최고숙련기술 보유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학점 인정과 연계하는 제도 및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예컨대 명장 선정 심의 결과 지식, 기술 및 자율성과 책임성 등이 KQF 6수준 또는 상위 수준과 매치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학점과 학위의 연계 취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방안이다.

이상 살펴본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 인정 배경 및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명장의 '경험학습인정(RPL)'을 전제로 명장 선정 시 심사 기준과 현행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요건 간 연계(안)를 모색하고, 둘째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추진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한민국 명장 학점 인정 관련 법제도, 주요 선행연구 및 학점 인정 관련 동향을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명장,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협의회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추진하고, 최종 방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대한민국 명장 학점 인정(안)과 추진 로드맵 및 후속과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 명장 학점 인정 관련 법제도 및 운영 현황 - 관련 동향 및 변화 요인 - 관련 선행연구 주요 내용 - 관계자, 이해당사자 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협의회, FGI, 현장 방문 면담조사, 전문가자문회의	- 명장 학점 인정 관련 이슈 논의 - FGI 조사지 검토 - 명장 선정 기준과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요건 연계(안) 논의 - KQF를 전제로 명장 학점 인정을 위한 RPL 범위 논의 - 단기 및 중장기 학점 인정 방안 논의 -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추진 로드맵(안) 논의

3. 연구 범위 및 한계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등의 인프라와 운용 플랫폼 구축을 전제로 한 KQF 상에서의 RPL 가이드라인이 개발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현장경력을 포함한 RPL 중심의 명장 학점 인정(안) 마련 시 고려사항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명장제도 및 학점은행제 등 현행 제도상에서 명장의 학점 인정이 가능한 범주와 인정 절차(안)를 제시하였다. 추후 KQF 가이드라인에 준한 학점 인정 세부 기준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대한민국 명장 학점 인정 관련 동향

1. 관련 법제도 및 운영

대한민국 명장 선정 사업의 근거 법은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직종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중소기업청장 등의 추천 형식으로 추진된다(http://www.hrdkorea.or.kr/3/6/2/1).

201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명장의 기술 적합성과 산업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명장 직종의 통합·세분화·재명명·신규 추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NCS 중분류를 적용, 명장 분야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로써 기존 22개 분야에서 37개 분야, 직종체계는 기존 96개에서 100여 개 직종으로 재정비되었다. 대한민국 명장의 궁극적 역량인 현장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NCS와 연계한 유망 직종을 추가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OPR연구소, 2016).

경험학습인정(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www.law.go.kr).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6.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www.law.go.kr).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3.「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4.「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6. 1. 27.>
1.「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다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 신설 2010. 5. 31.]

「평생교육법」 제40조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학력 인정이 명시되어 있고,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www.law.go.kr).

1. 각급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③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 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www.cb.or.kr). 1998년 제1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차 교수요목을 고시하고(41개 전공, 167개 학습과목), 2001년 제1차 국가기술자격 학점 인정 기준을 고시하였으며, 2002년 제1차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을 고시(238개 전공)하였다. 최근 5년간 학점은행제의 학습자 등록 현황을 보면 전문학사 등록이 적지는 않으나 학사 등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가 시행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전문학사과정 학습자 등록 수는 573,502명, 학사과정 학습자 등록 수는 727,594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격증 취득으로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을 받은 경우는 다양한 학점원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가 전체 84,208,029명 중 7.3%인 6,183,851명으로 나타났다(2017년 1월 1일 기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학위, 자격, 현장경력을 포함하여 생애에 걸친 개인의 모든 학습경험과 근로경험의 상호 연계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이다. 이는 「자격기본법」제2조(정의)인 '자격체계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3년 국가역량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2016년 12월 '자격정책심의회'에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기본 틀을 확정하였고, 2017년 현재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안)의 구체적 설계와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SC의 SQF 개발 시 큰 틀에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 일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적 교류를 위하여 유럽과 아세안 국가의 역량체계도 참고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체계가 구축·운영될 경우 국가와 개인의 시간과 비용의 중복을 줄이고, 평생에 걸친 다양한 역량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과 중심의 실질적 교육훈련과 자격 운영과 이를 토대로 국내외 인력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서 기업의 인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2018년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 인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명장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KQF의 현장경력 중심의 RPL 운영과 연계하여 학점은행제 인정 분야 및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QF 차원에서 명장에 대한 경험학습인정(RPL)이 구체화되어 작동되려면 시간이 더 소요

되겠지만, 현행 제도 안에서의 추진과 관련해서도 추진 주관기관, 학점인정심의회(가칭) 설치, 절차 및 상세 운영 방안 등 후속 시행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2. 선행 연구 분석

대한민국 명장 학점 인정 관련 연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장동현 외(2010)의 '명장 등 우수기능인 학점 인정 방안 연구'에서는 명장의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명장의 90%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험학습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동일 분야 20년 이상 현장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을 국가기술자격 학점 인정 기준의 현장경력 1년당 3학점을 적용하여 총 60학점 수준의 인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교양 수업 등의 추가 이수가 필요하고, 각 전공의 학습 과목과 명장 수행 직무가 유사할 경우 해당 분야 전공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해영 외(2011)는 선행학습 인정 적용 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에서 평가 인정의 대상을 「고등교육법」 상 형식교육 참여 경험, 「평생교육법」 상 비형식교육 참여 경험 및 무형식학습 경험으로서 사업장에서의 근무경험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정 범위를 졸업을 위한 최소 학점의 1/4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학점은행제도 및 평생학습계좌제와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고혜원 외(2012)는 대한민국 명장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에서 대한민국 명장의 개별 역량 중요도를 분석했는데, 명장들은 전문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요구역량은 목표 설정, 사업 및 시장 통찰력, 전략적 계획 수립, 변화 주도, 정보 수집과 분석, 전문지식, 고객 지향, 자기계발 및 창의성 역량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명장의 현장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때 또는 기초능력, 교양 등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필요가 있을 때 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상진 외(2014)는 개별법 상 현장경력 인정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기술자격 현장경력 평가 인정 시행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필수 현장경력 기간 확인과 신청, 종목별 심사평가자 지정 등 명장의 현장경력 인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ORP연구소(2016)는 NCS를 적용한 대한민국 명장 선정 직종 적합성 분석 연구에서 명

장 직종 선정 기준으로 기술 적합성의 경우 차별화된 기술 요구 여부, 산업 적합성은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도/향후 인력 수요/국가와 산업 기여도를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취업자 전망 및 산업 동향을 고려하여 5개 직종을 폐지하고 12개 직종을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이 결과는 2017년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정원호(2016)의 대한민국 명장 선정체계 개편 방안 연구에서 본 연구 추진에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는 명장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명장 선정 당시의 학력은 고졸이 31.5%, 중졸 이하가 21.3%였으며, 2012년 이후 선정된 명장들 중에는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15.7%로 높았다. 현장경력은 25년 이상이 73.4%,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험이 있는 명장은 28.7%, 자격은 기능사 보유가 53.9%, 기능장이 45.2%로 나타났다. 산업현장교수로 활동하는 비중이 27.8%로 가장 많았고, 평균 4.4건의 특허와 4.1건의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 및 품질 개선 실적이 있는 경우는 80.9%로, 기계 분야와 근로자 집단에서 높았다. 공모전 입상, 각종 매체 기고 평균 실적은 16.6건으로 조사되었다. 논문 저술 실적도 49.1%로 평균 7.8건을 저술하였고, 매뉴얼 개발 실적은 60.0%, 평균 17.1건이었다. 명장 선정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기술전수 및 교육 활동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사업체 운영자보다 근로자인 명장의 경우 21.3%는 선정 후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6.2%는 자격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FGI 조사지를 설계하고 인터뷰를 추진하였다.

이승 외(2017)는 일학습병행제 선행경험학습 인정 적용 방안 연구에서 RPL의 유형을 분류하고, 명장의 학점인정과 관련시킬 수 있는 근로경험의 경우 동일 직무 분야 근로시간의 1/3만큼을 학습시간으로, 현행「고등교육법」및 시행령을 토대로 1년 최대 9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해외 사례 분석

일반적으로 개인의 무형식, 비형식의 학습에 따른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RVA(Recogni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of the Outcomes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라고 지칭하며, RVA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관련 제도 운영의 목적에 따라 운영 범위 및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이 형식, 무형식, 그리고 비형식의 학습을 통해 습득한 학습 성과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에 대

해서는 선행학습 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또는 선행학습 평가(prior learning assessment) 등을 사용하고, 인정을 받은 학습 성과를 통용되는 기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학점 전환(credit transfer)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RVA의 운영 사례(EU, 영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를 살펴보았다.

EU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의 평가된 학습 결과에 대한 전환, 누적을 돕기 위하여 ECVET(European Credit System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을 구축하였다. ECVET은 자격 취득의 관점에서 개인의 학습 성과를 전환, 인정, 그리고 누적하기 위한 기술적인 체계로서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 등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유럽 전역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체제와 자격 간의 보다 나은 호환성을 목표로 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학습 성과가 학점으로 부여되고, 이러한 학점은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데 기여한다. 전문적인 활동,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및 기타 학습을 통해 무형식 및 비형식 학습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APL(Accreditation of Prior Learning)은 최근 보다 융통성 있도록 학생들을 현장에 적합하게 준비시키기 위하여 고용주와 함께 설계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일 기반 학습이나 고용 기반 학습 및 훈련의 인정(accreditation)을 위한 일환으로 교육과정 내에서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력적인 체계이다. 학점 전환은 개인의 개별 평가보다는 고용 기반 훈련프로그램에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학점 전환은 수행한 학습의 양과 깊이에 따라 정의된 학습 성과에 기초하여 계산되며, 1 학점은 10 시간의 학습 시간에 상응한다(Pollad E. et al., 2017). 또한 APL 체계 감독기관인 QAA(Quality Assurance Agency)에 의해 질 보증을 위한 지침이 발행되었다(Singh, M., 2015).

호주의 경우는 국내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직업교육훈련 중심이다. 호주 RPL은 현장 경력 및 학습을 통해, 호주 또는 해외에서 삶의 경험, 일 또는 봉사활동과 같은 기타 활동에서 근무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개인의 스킬, 지식 및 경험을 평가한다. 자격은 단위 표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직접 부여 또는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다. RPL은 모든 공인된 자격(accredited qualifications)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지속되어 왔는데, 현재 평가에는 학점으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직업교육과 대학 사이의 학점 전환은

학점 전환 협정의 유무에 따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점 전환 협정 시 대학 학위에 따른 최대 학점이 다르게 부여된다(Walls, S. et al., 2010).

뉴질랜드에서 RPL은 선행학습 인증 학점 전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형식(formal), 무형식(non-formal), 비형식(informal) 학습을 고려한다. 비형식 학습에 있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인정은 일터에서의 훈련이나 학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보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학점 전환은 한 자격(qualification)으로부터 성취한 학점을 새로운 자격에서 인정해 주는 과정이다(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 2002).

〈표 2〉 해외 RPL 사례

구분	EU	영국	호주	뉴질랜드
목적	• 유럽 시민들의 이동성(mobility) 지원 • 평생학습(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촉진 • 개인의 학습 경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 다른 국가 및 다른 학습 환경 간의 이동을 촉진	• 형식 교육 체계에서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무형식(non-formal) 학습을 인정하기 위함.	• 현장경력 및 학습을 통해 호주 또는 해외에서 삶의 경험, 일 또는 봉사활동과 같은 기타 활동에서 근무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개인의 스킬, 지식 및 경험을 평가	• 개인의 RPL은 형식 (formal), 무형식(non-formal), 그리고 비형식(informal) 학습에 대한 인정 • 학점 전환은 한 자격(qualification)으로부터 성취한 학점을 새로운 자격에서 인정해 주는 과정
기준	• 학습 성과 단위	• 학습 성과 단위	• 학습 성과 단위	• 학습 성과 단위
학점 전환	• one year = 60 ECVET points • 형식적인 직업교육훈련의 1년 프로그램에 full time으로 참여했을 때 예상되는 학습 성과를 60 point로 간주	• 1 학점 = 10의 개념적인 학습 시간 • 1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2 UK 학점	• 학점 전환 협정에 의거	• 1 학점 = 10의 개념적인 학습 시간 • 일반적인 학습자는 1년에 120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시간
질 보증	•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 • 상호 신뢰에 기반	• QAA(Quality Assurance Agency)의 한 지침 발행 • 사전 학습의 인정(accreditation)에 대한 결정은 학문적 판단의 문제	• 감독체제를 주(states)와 준주(territories)에 위임하며, 등록 기관의 승인 및 인증에 대한 책임 부여	• 교육 제공자의 행정적이고 실용적인 준비 권고 • 데이터 수집 체계의 표준화

출처: EU: European Commission(2011), EUROPEAN COMMISSION(2012), Singh, M. (2015), http://www.ecvet-toolkit.eu/introduction.
영국: Pollard, E., Hadjivassiliou, K., Swift, S., & Green, M.(2017), Singh, M.(2015).
호주: Walls, S., & Pardy, J.(2010), https://www.skillscertified.com.au/rpl.
뉴질랜드: New Zealand Qalification Authority(2002). New Zealand Government(2016).

Ⅲ. FGI 및 결과 분석

1. FGI 대상 및 조사 내용

심층면접을 위하여 대한민국 명장은 명장회의 추천을 받아 직종 및 지역을 고려하여 20인을 선정하였다. 명장 등 자격, 평생교육훈련 및 KQF 등 정책연구사업 수행 경험을 고려하여 원내외 교육훈련전문가 6인, 자격전문가 5인을 포함 총 31인을 대상으로 약 2주일 간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표 3> 참조).

〈표 3〉 FGI 조사 항목

순번	항목	명장	자격 및 교육훈련 전문가
1	일반(명장 직종 세부)	○	X
2	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인식 및 대우 정도	○	○
3	명장과 학위의 인식 수준	○	○
4	명장 개인의 경력개발 필요 부분	○	○
5	산업체 현장 근무에서의 학위 필요성	○	○
6	교육자·혁신자로서의 학위 필요성	○	○
7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의 명장 활동에 도움 여부	○	○
8	학위 수여 시 혜택	○	○
9	고졸 이하 명장의 고등교육 진행 시 검정고시의 적절성	○	○
10	명장 활동 관리하는 운영체계에 대한 요구	○	○
11	자격 등급별 인정 학점의 적절성	○	○
12	전문 분야 외의 추가 학점(교양, 기초직업능력 등) 이수 필요 여부	○	○
13	전문 분야 외의 추가 학점(교양, 기초직업능력 등) 이수 필요시	○	○
14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 심사과정 방법_신청 및 심사 시점	○	○
15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 심사과정 방법_신청 및 심사 횟수	○	○
16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 시 직종, 경력에 따른 인정	○	○
17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부분	○	○
18	학위 취득 연계 시 질적 수준 확보의 중요점	○	○
19	학위 연계를 위해 선행해야 할 정부의 역할	○	○
20	명장 선정 전 학점 연계 경력 인정 기간	○	○
21	명장 선정 후의 학점 연계 경력 인정 기간	○	○
22	명장 선정만으로 학위 취득 가능 여부	X	○
23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의 NCS 적용	X	○

2. 결과 분석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 인정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 자격전문가와 교육훈련전문가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명장과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두 그룹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질문 항목에 따라 자격전문가와 교육훈련전문가 간 의견이 상이한 부분은 별도 기술하였다. FGI 대상 명장 20인의 선정 당시 최종 학력은 박사 3인, 석사 5인, 학사 4인, 전문학사 1인, 고등학교 졸업자 5인, 중학교 졸업자 2인이었다. 분석 결과 명장의 최종 학력에 따라 명장의 학점 인정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FGI 대상 전문가 분야

구분	평균 경력	전문 분야
자격전문가	14.4	자격제도, 인력 경영, 평생교육(직업교육), 직업교육, 선행학습 인정, 자격제도
교육훈련전문가	22.6	고등교육, 교육행정, 평생직업교육, 노동경제(교육훈련), 직업교육과정
대한민국 명장	40.7	기계, 재료, 전기, 통신, 항공, 건축, 섬유, 농림, 산업디자인, 산업응용, 공예, 서비스, 전자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명장은‘보통이다’32.6%, ‘사회적으로 알려져있지 않으며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가 37.0%로 높게 나타났다.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45.0%가‘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대받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인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명장과 학위를 비교할 때의 사회적 인식 및 가치 수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명장 80.0%와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63.7%가 ‘명장이 높다.’와‘명장이 훨씬 높다.’라는 의견이었다. 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신뢰 및 활용을 제고하는 명장 개인의 경력개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명장의 56.0%,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40%가 ‘교육, 봉사 기회 지속 제공’으로 의견이 모아졌다(<표 5> 참조).

〈표 5〉 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인식 및 경력개발 요건

단위: %(응답 수)

구분		명장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명장의 사회적 인식 및 대우 정도	사회적으로 매우 알려져 있으며 우대받고 있다.	5.3(1)	18.0(2)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대받고 있다.	21.0(4)	45.0(5)
	보통이다.	32.0(6)	27.0(3)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	37.0(7)	9.0(1)
	사회적으로 매우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	5.3(1)	0(0)
전체		100(19)	100(11)
명장과 학위의 수준 인식	명장이 훨씬 높다.	60.0(12)	36.4(4)
	명장이 높다.	20.0(4)	27.3(3)
	명장과 학위의 가치나 인식이 비슷하다.	5.0(1)	18.2(2)
	학위가 높다.	10.0(2)	9.1(1)
	학위가 훨씬 높다.	5.0(1)	9.1(1)
전체		100(20)	100(11)
명장 개인의 경력 개발 필요	교육, 봉사 기회 지속 제공	56.0(14)	40.0(4)
	행·재정적 활동 (누적)관리, 발표 기회 제공	16.0(4)	0(0)
	분야별 첨단·신기술 등 연수, 재교육 기회 확대	20.0(5)	40.0(4)
	개인 차원 경력개발 경로 지원	8.0(2)	20.0(2)
전체		100(20, 복수 응답 25)	100(10)

산업체 현장에서의 학위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명장은 '매우 필요하다.'(47.0%)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45.0%가 학위는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다. 교육자·혁신자로서의 역할 수행 시 학위 필요성에 대해서 대한민국 명장은 '필요하다.'(89.0%),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역시 82%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이 대한민국 명장의 처우, 명장 선정 이후의 경력개발 및 사회 환원 등의 활동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장과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모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위 수여 시 명장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명장은 '명예'(40.0%),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45.5%)으로 수혜 부분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표 6> 참조).

명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존경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학위를

받도록 유도하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기술 장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보상이며, 이들에게 학위에 대한 기회를 제공의 이유로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전문가 1)

국가에서는 학력보다 능력 사회를 만들고자 하지만 대부분 산업체에서는 아직도 학벌에 대한 편견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장 1)

이론적 바탕 없이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으며, 학위 없이 기술만 좋아가지고는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명장 2)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으나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장 3)

전문 분야 기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핵심 이론과 논리적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과 함께 이론을 겸비한 다양한 실무적 기술이 함께 필요합니다. (명장 4)

교육자, 혁신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론적 배경을 갖지 못하고 교육을 한다면, 이론과 실무 기술을 교육하는 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명장 5)

자기 개발과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장 6)

아직 학력 풍토가 많이 있다. 현 정부는 이력서에 학력을 배제하고 있지만 대분의 경우 학력 요구를 많이 합니다. (명장 7)

고숙련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교육을 받음으로써 체계적 기술 향상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전문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장 8)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과 학력이 공존하고, 연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장 9)

〈표 6〉 대한민국 명장의 학위 필요성 및 혜택

단위: %(응답 수)

구분		명장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산업체 현장 근무에서의 학위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5.3(1)	18.0(2)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3(1)	45.0(5)
	보통이다.	16.0(3)	27.0(3)
	필요하다.	26.0(5)	9.0(1)
	매우 필요하다.	47.0(9)	0(0)
전체		100(19)	100(11)
교육자·혁신자로서의 학위 필요성	필요하다.	89.0(16)	18.0(2)
	필요하지 않다.	11.0(2)	82.0(9)
전체		100(18)	100(11)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의 명장 활동에 도움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5.0(1)	9.0(1)
	그렇지 않다.	5.0(1)	0(0)
	보통이다.	15.0(3)	27.0(3)
	그렇다.	20.0(4)	45.0(5)
	매우 그렇다.	55.0(11)	18.0(2)
전체		100(20)	100(11)
학위 수여 시, 혜택	인사고과 및 승진에 반영	15(3)	9.1(1)
	급여 인상	0(0)	0(0)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	30(6)	45.5(5)
	명예	40(8)	36.4(4)
	기타	15(3)	9.1(1)
전체		100(20)	100(11)

고졸 이하 명장의 고등교육 진입을 위한 검정고시 시행에 대하여 명장은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48.0%,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54.0%로 나타났다. 명장 선정 이후의 활동을 누적·관리·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명장과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모두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자격 등급별 인정 학점은 명장 58.0%,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64.0%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8> 참조).

> 명장의 숙련 기술에 대한 인증이 고등교육 이상 수준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중등교육 수준에서 검정고시 등을 통한 인정 여부는 불필요합니다. (교육훈련전문가 1)

고등학교를 다니다 포기하고 직업학교 2년을 수료한 후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한 것을 학력이나 학점을 인정받는다면 공고 졸업자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명장 10)

〈표 7〉 대한민국 명장의 검정고시 적절성

단위: %(응답 수)

구분		명장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고졸 이하 명장의 고등교육 진행 시 검정고시의 적절성	매우 적절하지 않다.	16.0(3)	27.0(3)
	적절하지 않다.	32.0(6)	27.0(3)
	보통이다.	26.0(5)	9.0(1)
	적절하다.	21.0(4)	36.0(4)
	매우 적절하다.	5.3(1)	0(0)
전체		100(19)	100(11)

〈표 8〉 대한민국 명장의 운영 체계 필요성

단위: %(응답 수)

구분		명장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명장 활동 관리하는 운영체계에 대한 요구	전혀 필요하지 않다.	10.0(2)	0(0)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0(1)	0(0)
	보통이다.	10.0(2)	9.0(1)
	필요하다.	15.0(3)	36.5(4)
	매우 필요하다.	60.0(12)	55.0(6)
전체		100(20)	100(11)

현재 학점은행제의 자격 등급별 인정 학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명장 58.0%,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64.0%로 모두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장의 전문 분야에 대한 학점 인정 외에 일반 소양, 교양, 기초직업능력 등 추가 학점 이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명장의 74%,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의 60.0%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교양 프로그램의 이수 기간(시간)은 명장의 경우 13.3학점, 이수 방법은 집체 및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들은 교양 프로그램의 이수 시간을 25.0학점이 적정한 것으로 밝혀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 등 추가 학점 이수에 대한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장에 대한 인식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명장은 소양, 교양, 기초직업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격전문가 2)

명장 학점 인정을 위한 명장 선정 전, 후의 인정 경력 기간 동안 공공 또는 사설 교육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누적 학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15시간을 1학점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교육훈련전문가 2)

명장에 준하는 자격 등급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 기준 시간에 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전문가 3)

타 분야 학점 인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명장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학점 인정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훈련전문가 4)

전통적 숙련 기술에만 집중하기보다 계속 교육 및 교양 교육을 통해 이 시대의 기술문화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명장 11)

명장의 학점 인정은 학위 취득을 위한 단순 목적이 아닌, 자기개발을 위한 선행 학습으로서 제도적 뒷받침 필요. 명장 개개인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장 12)

최고의 학점을 인정해야 한다. 기술사, 변호사 인원에 비하면 명장은 한 분야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소수 인원이다. (명장 13)

교양 학점은 30학점, 10과목 정도가 적당할 듯합니다.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겠지요. (명장 14)

〈표 9〉 대한민국 명장의 추가 학점 인정

단위: %(응답 수)

구분		대한민국 명장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자격 등급별 인정 학점의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26.0(5)	9.0(1)
	그렇지 않다.	11.0(2)	18.0(2)
	보통이다.	5.3(1)	9.0(1)
	그렇다.	16.0(3)	55.0(6)
	매우 그렇다.	42.0(8)	9.0(1)
전체		100.0(19)	100.0(11)
전문 분야 외의 추가 학점(교양, 기초직업능력 등) 이수 필요 여부	매우 적절하지 않다.	5.3(1)	20.0(2)
	적절하지 않다.	11.0(2)	10.0(1)
	보통이다.	11.0(2)	10.0(1)
	적절하다.	37.0(7)	50.0(5)
	매우 적절하다.	37.0(7)	10.0(1)
전체		100.0(19)	100(10)
전문 분야 외의 추가 학점(교양, 기초직업능력 등) 이수 필요시 이수 방법	교양 프로그램의 이수 기간	평균 26.7시간	평균 270.0시간
	학점	평균 13.3학점	평균 25.0학점
	이수 방법	집체, 온라인 혼합	집체, 온라인 혼합
전체		100(12)	100(2)

학위 취득 심사의 신청 및 심사 시점에 대해서는 '명장 선정 신청 및 심사와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명장 55.0%,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91.0%로 나타나 명장과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신청 및 심사 횟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명장(55.6%)과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45.4%) 모두 1년에 2회 진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표 10〉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 인정 심사 과정

단위: %(응답 수)

구분		명장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 심사 과정 방법 _심사 시점	명장 심사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25.0(5)	9.0(1)
	명장 심사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20.0(4)	0(0)
	명장 선정 신청 및 심사와 상관없이 별도로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55.0(11)	91.0(10)
전체		100.0(20)	100(11)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 심사 과정 방법 _심사 횟수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	27.8(5)	36.4(3)
	1년에 2회 진행해야 한다.	55.6(10)	45.4(5)
	기타	16.7(3)	18.2(2)
전체		100.0(18)	100(11)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에 대해 직종, 경력에 따라 다르게 학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질문에는 '차등이 없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명장 50.0%,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45.5%로 나타났다. '경력에만 차등 적용 필요'는 응답은 두 그룹 모두 20% 수준에서 의견이 모아졌으나, '분야에만 차등 적용 필요'는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의 27.3%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명장보다 높았다. 명장의 경우 '경력별, 분야별로 모두 차등 적용 필요'에 25.0%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추후 구체적 경력 인정 방안 마련 시 고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 명장 심사 시 전문 분야의 지식 및 기술이 대학교 졸업 이상 학사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를 검증하여 명장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장 15)

〈표 11〉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 경력에 따른 학점 인정

단위: %(응답 수)

구분		명장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 시 직종, 경력에 따른 인정	차등이 없어야 함.	50.0(10)	45.5(5)
	경력에만 차등 적용 필요	20.0(4)	18.2(2)
	분야에만 차등 적용 필요	5.0(1)	27.3(3)
	경력별, 분야별로 모두 차등 적용 필요	25.0(5)	0(0)
	기타	0(0)	9.0(1)
전체		100(20)	100(11)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을 위한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명장은 '공공 분야 교육훈련 및 봉사 평가 인정 확대', '자격증 학점 인정 방식 도입'이 각각 36.4%로 가장 많았고,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자격증 학점 인정 방식 도입'과 '재직 중 연수 등을 비롯한 교육훈련 관련 기관에서의 학습경험 학점 인정 확대'가 각각 36.4%로 나타났다. 명장의 학위 취득 연계 시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방법에는 명장은 '명장 선정 직종 관련 직업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3.0%로 가장 많았고,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현장경험에 대한 증빙 서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0.0%로 나타났다. 학점 및 학위 연계를 위해 선행해야 할 정부의 역할로는 두 그룹 모두 '현장 실무경력 등 명장 선정 전후의 이력 누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2> 참조).

> 대학교 소속 활동에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석사 학위 이상의 졸업 취득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장 16)

> 한국사회는 학위에 대한 이상한 권위와 차별이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너무 안타깝다. 참된 능력중심사회를 지향하려면 대한민국 사회의 기존 틀을 타파할 수 있는 효과의 인센티브가 절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론보다는 결국 모든 것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 국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단인 적정 학위가 꼭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 기술 강국을 촉진하는 것이다. (명장 17)

〈표 12〉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 제도 개선

단위: %(응답 수)

구분		명장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부분	공공 분야 교육훈련 및 봉사 평가 인정 확대	33.3(8)	27.3(3)
	자격증 학점 인정 방식 도입 (명장 포함 소외 자격증 학점 인정)	33.3(8)	36.4(4)
	재직 중 연수 등을 비롯한 교육훈련 관련 기관에서의 학습경험 학점 인정 확대	20.8(5)	36.4(4)
	학점 이수 상시 접수제 도입	12.5(3)	0(0)
전체		100.0 (24, 복수 응답)	100(11)
학위 취득 연계 시 질적 수준 확보 방안	명장 선정 직종 관련 직업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	43.0(9)	30.0(3)
	학점 인정과 이를 통한 학위 취득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19.0(4)	20.0(2)
	명장의 교육훈련, 자격 및 현장경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강화해야 한다.	19.0(4)	40.0(4)
	교양 등 기초직업능력에 대해 별도 평가 또는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	19.0(4)	10.0(1)
전체		100 (21, 복수 응답)	100(10)
학위 연계를 위해 선행해야 할 정부의 역할	대국민 홍보 강화	7.0(2)	0(0)
	관련법 개정	24.1(7)	18.2(2)
	현장 실무경력 등 명장 선정 전후의 이력 누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31.0(9)	63.6(7)
	명장의 교육훈련비 및 프로그램 지원	20.7(6)	0(0)
	학벌주의 중심의 시민의식 개혁	17.2(5)	18.2(0)
	기업의 적극적 동참 유도	0(0)	0(0)
전체		100.0 (29, 복수 응답)	100(10)

명장 선정 전, 후의 자격 취득 및 현장 실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명장은 선정 전 16년, 명장 선정 후 7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였다.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는 전 후, 각각 8년과 4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표 13> 참조).

> 명장 선정 시 현장경력은 평가를 통해 검증된 것이므로 일정한 학점을 인정하고 선정 후 명장의 활동 경력(실무, 자격 취득, 비형식학습 등의 RPL)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요구 학점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RPL을 통

해 온·오프라인으로 직종별 실무능력과 관련한 필수 교과목 및 교양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교육훈련 전문가 5)

명장 선정 전후 현장경력을 포함한 RPL을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격전문가 2)

우선적으로 명장으로 선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적정 학점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격전문가 3)

명장은 동일 기술계에서 최고로 한정되어 있어 어느 인정 학점보다 특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명장은 동일 기술 분야 석사학위 수준의 학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장 18)

〈표 13〉 대한민국 명장의 현장경력 인정 기간

단위: 연

구분	명장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명장 선정 전 학점 연계 현장경력 인정 기간	평균 16년/최소 2년/최대 30년	평균 8년/최소 3년/최대 15년
명장 선정 후의 학점 연계 현장경력 인정 기간	평균 7년/최소 1년/최대 15년	평균 4년/최소 3년/최대 5년
전체	100.0(20)	100(10)

명장 선정 연도부터 현재까지 근무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 (명장)

명장 선정만으로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자격 및 교육훈련 전문가 36.4%가 '매우 적절하지 않다.'로 응답했으며, 명장의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을 결과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개편된 자격 종목에 한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54.5%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4〉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시 학위 취득 및 NCS 적용 가능성

단위: %(응답 수)

대상	구분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전체(명)
자격 및 교육훈련 전문가	명장 선정만으로 학위 취득 가능 여부	36.4(4)	27.3(3)	9.1(1)	9.1(1)	18.2(2)	100(11)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의 NCS 적용	18.2(2)	18.2(2)	9.1(1)	54.5(6)	0(0)	100(11)

Ⅳ. 대한민국 명장 학점 인정(안)

1. 명장 학점 인정(안) 마련 시 고려 사항

관련 법제도, 국내외 연구 및 FGI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 인정 방안 마련 시 고려 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명장 학점 인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한 학점 인정 기준을 설정하여 인정의 결과를 납득하고 통용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즉, 최고 숙련 기술인을 명장으로 선정·우대하는 명장제도와 편성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획득하는 역량 사이의 상이점에 대한 관련자 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명장 학점 인정의 근간은 경험학습인정(RPL)을 통한 현장경력 및 역량수준의 판단 등 결과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고등 단계 계속교육의 출발점인 고등학교 졸업, 그에 준하는 과정 이수와 학습 시간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셋째, 명장의 현장 경력을 포함한 RPL은 객관성, 투명성 검증을 통해 질 관리가 되어야 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 운영 초기에는 국가 수준에서 법제도 개선과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본적으로 절차적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점인정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의 객관성 등 유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장 학점 인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과 법제도 개선, 그에 따른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 적용을 통해 관련 이해당사자 간 이견의 폭을 좁혀 나가야 한다.

다섯째, NCS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직종에 대한 현장경력 인정은 별도 세부 기준을 개발, 검증·적용하여 자기 계발과 향상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2. 명장 학점 인정 범위 및 절차(안)

명장 학점 인정의 범위는 현행 명장 선정 기준과 관련 법 상의 학점 인정이 가능한 부분을 포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15〉 대한민국 명장의 RPL 학점 인정 범위

명장 선정 기준	- 해당 NCS 직종 현장경력 - 기능경기대회 입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 - 우수 숙련기술인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서적 및 논문 저술 - 매뉴얼 개발 - 대외 활동 - 사회 봉사활동 - 기타 가산점(훈·포장)	- 명장의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모든 학습경험을 누적, 평가·인정 가능 * 현장경력은 관리·검증된 경우에 한 함. * NCS 및 ISC가 없는 경우 KQF 별도 기준 마련 * 명장 선정 기준 세부 내용 참조 - RPL 관련 세 가지 법제도 상의 형식, 비형식 및 무형식 교육훈련 등 *학습경험은 명장 선정 전후 포함
현행 법제도	- 고등교육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평생교육법	

명장의 현장경력 인정은 FGI와 전문가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명장 선정 자체가 최고 수준의 현장경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큰 의미는 없으나 학점 인정 시 우선 고려 요건을 두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합의되었다. 직종별로 기술의 최신성, R&D 중요성 등 특성을 고려하고, ISC에서 개발한 SQF가 있을 경우 그 수준을 참고하여 경력 인정 구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명장 선정 시점 전 5~10년, 명장 선정 후 최근 5년 내 실적을 중심으로 RPL을 중심으로 학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명장의 RPL을 통한 학점 인정 수위는 현 학점은행제 학위 수여 요건과 연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제안하였다. 명장의 현장경력 1년에 해당하는 학점 인정은 현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6. 다른 학교 ·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 · 연구 · 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학점 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3.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를 준용하여 1년에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이승 외, 2017)

〈표 16〉 대한민국 명장의 RPL 학점 인정과 학위 요건 연계(안)

<table>
<tr><th></th><th colspan="2">학위 요건</th><th>명장 RPL 학점 인정</th></tr>
<tr><td rowspan="3">교육부 장관 명</td><td>전문학사</td><td>학사</td><td rowspan="3">- 전문학사의 경우 전공 45학점과 일선 20학점, 총 65학점까지 명장 RPL 실적으로 인정 가능
- 학사의 경우 전공 60학점과 일선 50학점, 총 110학점까지 명장 RPL 실적으로 인정 가능

- 해당 NCS 직종 현장경력
- 기능경기대회 입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
- 우수 숙련기술인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 서적 및 논문 저술
- 매뉴얼 개발
- 기타 가산점(훈·포장)

* 현장경력에 대한 인정은 NCS 직종별 직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관리·검증된 현장경력은 NCS 능력단위가 명시된 경력증명서만 유효. 추후 이를 토대로 직종별 ISC에서 전공 실무교과목과 맵핑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 학점 인정 기준 우선 준용. 추후 직종별 ISC에서 개선 방안 마련

구분 / 학점
기술사 / 45
기능장 / 30
기사 / 20
산업기사 / 16
기능사는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 인정 불가

- 전문학사 15학점, 학사 30학점인 교양 학점은 다음의 명장 RPL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대외활동
- 사회봉사활동

* 학위에 요구되는 전공, 일선 및 교양 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생교육기관 및 대학 등에서 해당 교과목을 할 수 있도록 리스트 및 제규정 마련</td></tr>
<tr><td>총 80학점</td><td>총 140학점</td></tr>
<tr><td>-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 일선 20학점</td><td>- 전공 60학점
- 교양 30학점
- 일선 50학점</td></tr>
<tr><td>대학의장 명</td><td colspan="2">◦ 각 대학에 속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문의. 제도 이용 전에 교육기관 측과 사전 상담을 요함.</td><td>- 대학의 장 명으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 요건을 충족하고자 할 경우 별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추진</td></tr>
</table>

http://www.cb.or.kr 참조.

명장의 학점 인정 절차(안)는 추후 명장의 학점 인정을 관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운영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다.

〈표 17〉 대한민국 명장 학점 인정 절차 및 주요 내용

절 차	주요 내용
명장 학점 인정 추진 계획 수립 및 공고	○ 학점 인정 추진 계획 수립 ○ 공고 - 해당 명장 직종 - 학점 인정(가능) 대상 리스트 - 학점 인정 기준 및 해당 교육훈련기관 - 학점 인정을 위한 신청 요건, 일정 및 심의 절차 - 관련 법, 주관기관, 관련 기관 명시 - 신청서 작성 방법,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일자, 장소 등 관련 정보
⇩	
신청서 접수 및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구성	○ 신청서 및 서류 접수 - 인정 추진 절차에 따른 신청자 대응 관련 세부 정보 제공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구성(교육훈련, 자격 및 ISC 전문가) - 위원회 대상 설명회 개최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확인 및 1차 심사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확인 - 신청 적부 판단 - 제출서류 충족 확인 ○ 1차 심사 추진 - 심사 및 심사의견서 작성, 검토
⇩	
최종 심사 및 학점인정심의의견서 작성	○ 최종 심사 추진 - KQF 가이드라인 및 ISC 참여 ○ 최종 학점인정심의의견서 작성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의견서 - 해당 ISC 의견서 - 종합 심의의견서
⇩	
심의 결과 통보 및 학점 인정 확인서 발급	○ 심의 결과 개별 통보, 확인서 발급 및 확인 절차 추진 ○ 관련 부처, ISC 및 교육훈련기관 공문 발송 ○ 사이트 탑재

* KQF 가이드라인 초안 24쪽을 참조하여 재구성함(최영렬 외, 2017).

3. 명장 학점 인정 추진 로드맵 및 추후 과제 제언

명장의 학점 인정은 NCS를 기반으로 SQF가 기 개발되어 있고, 학습경험보다 현장에서의 숙련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직종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장의 현장경력 중심 경험학습인정(RPL) 추진 로드맵과 그에 따른 필요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18〉 대한민국 명장 학점 인정 추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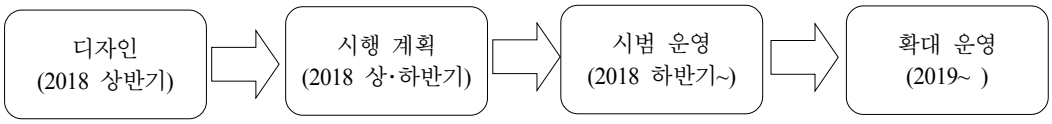

계획단계에서는 KQF 상의 RPL 가이드라인(개발 중)에 따라 해당 ISC별로 현장경험의 단계 및 수준 설정, 수준별 개인의 현장경력 인정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종별로 현장경력 인정 및 누적 이력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면 중장기적으로 명장의 SQF 수준에 따라 학위 인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명장의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무성 각각의 수준이 SQF의 기준을 충족하여 5~6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학사학위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 계획 단계에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필요한 시행령을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시행할 역량이 있는 ISC를 발굴하고 역할을 부여하며, 실행 기구(기관)를 구성,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정책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명장의 현장경력 누적·관리·인정을 위한 R&D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준비하며, 이해관계자(교육훈련, 자격, 고용주 등)들 간에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이 단계에서 명장의 현장경력을 누적·관리·인정하는 모형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확대 운영 단계에서는 명장의 학점 인정 ISC 지정을 확대하고, 명장이 진입 가능한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의 리스트를 점검하거나 필요할 경우 개발하도록 한다. 해당 ISC별 심사평가자 풀을 구축·운영하고, 경력관리시스템 및 소양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관련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업계를 대상으로 명장의 위상에 대한 홍보를 통

해 교육훈련 및 R&D 현장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명장으로 하여금 해당 직종의 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상담, 채용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여 명장의 사회적 위상 제고와 기술숙련인의 세대 간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장의 직종과 타 분야와의 융합기술 연구를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명장의 역량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확대 운영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참고문헌

고혜원 외(2012).『대한민국명장 제도 선진화 방안-예비 대한민국명장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상진 외(2014).『국가기술자격을 통한 현장경력의 체계적 인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PR연구소(2016).『NCS를 적용한 대한민국명장 선정직종 적합성 분석』.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이승 외(2017).『일학습병행제 선행경험학습인정(RPL)적용 방안 연구』. 한국산학협력학회.

이해영 외(2011).『선행학습인정(RPL) 적용 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장동현 외(2010).『명장 등 우수기능인 학점인정 방안 연구』. 평생교육진흥원.

정원호(2016).『대한민국명장 선정체계 개편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렬 외(2017).『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가이드라인 초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https://www.cb.or.kr

대한민국명장회 홈페이지, http://www.masteror.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main.html

숙련기술인포털, https://meister.hrdkore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

European Commission(2011). ECVET Questions and Answers.

EUROPEAN COMMISSION(2012). Using ECVET to support Lifelong Learning.

http://www.ecvet-toolkit.eu/introduction.

https://www.skillscertified.com.au/rpl

New Zealand Government(2016).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Framework.

New Zealand Qalification Authority(2002). SUPPORTING LEARNING PATHWAYS Credit Recognition and Transfer Policy. Retrieved from http://www.nzqa.govt.nz.

Pollard, E., Hadjivassiliou, K., Swift, S., & Green, M.(2017). Credit Transfer in Higher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Department for Education.

Singh, M.(2015). Global Perspectives on Recognising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Walls, S., & Pardy, J. (2010). Credit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learner mobility. NCVER.

Abstract

Plan for the Credit Recognition System for the Korean Master Hands

To prepare a credit recognition system for the Korean master hands, analyses of major preceding researches, and FGI of education experts and certification experts were promoted in this research.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e henceforth tasks were proposed such as a medium-and long-term semester credit recognition system plan for the master hands, improvement of legal system, and a road map.

The professionals' common opinion that the personal opportunity of a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should be equally offered like who would receive a credit recognition suggested an outline of the credit recognition system as the Korean master hands would be selected or be given preference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t comment on seeking a connection with education credits.

In the short run, they proposed a plan of a credit recognition system considering the criterion of selecting the Korean master hand with RPL as the center-point within the current credit recognition system, and a next plan applying the SOF by ISC under KQF in the medium-and long-run.

The procedure of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Credit Recognition Committee(a tentative name)' for the Korean master hands, and necessary henceforth tasks are also suggested.

Keyword: Korean master hand, Academic credit bank system,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KQF),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RPL)

[부록 1: 자격 및 교육훈련전문가 대상 FGI 조사지]

‘대한민국 명장 학점인정 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

‘대한민국 명장 학점인정 방안’연구는 교육부의 평생교육정책과 수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전문가 조사는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인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입니다.

그간 명장의 교육훈련, 자격 및 현장 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 기관 및 명장 개인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 법령 중 학점은행제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대한민국 명장은 명장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과 학위 수여는 비교, 평가 및 인정할 수 있는 전수교육과정이나 자격 출제 기준 등의 인정 체계가 없어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전문가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타당성 있는 학점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 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모두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① 전문가 (성명:)				② 기관 (기관명:)			
연 령	( )세	성 별	□ 남 □ 여	전문 분야		경력연수	( )년

문항		의견
A1	귀하께서는 명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회적으로 매우 알려져 있으며 우대받고 있다. ②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대받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 ⑤ 사회적으로 매우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
A2	명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 및 사회적 활용을 제고하는 명장 개인의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교육, 봉사 기회 지속 제공 ② 행·재정적 활동 (누적)관리, 발표 기회 제공 ③ 분야별 첨단·신기술 등 연수, 재교육 기회 확대 ④ 개인 차원 경력개발 경로 지원 ⑤ 기타 의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견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는 명장이 산업체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A4	최근 조사에서 명장의 역할이 교육자·혁신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명장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학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5	고졸 이하의 명장의 경우 고등교육 진입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정고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른 방안이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6	귀하는 명장에 대한 학점인정 및 학위 취득이 향후 명장의 처우, 명장 선정 이후의 경력개발 및 사회 환원 등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A7	명장선정 이후의 활동들을 누적·관리·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A8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자 격 증 / 학 점 기술사 45 학점 변호사 45 학점 변리사 45 학점 기능장 30 학점 기사 20 학점 산업기사 16 학점 ※ 현행 학점은행제에서 자격 학점의 최대 인정 학점은 45학점임. 명장을 다른 자격과 비교하여 학점을 부여할 경우, 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적절하지 않다면 몇 학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9	명장 전문 분야에 대한 학점인정 이외에 일반 소양, 교양, 기초직업능력 등 관련한 추가 학점이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교양 프로그램의 이수기간(시간): - 학점(또는 해당 교과목 개수):

							- 이수방법(집체교육, 온라인 등 포함):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추가 학점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의견	
A10	귀하는 명장에 대한 학점인정이 도입되어 학위를 수여받는다면, 가장 크게 도움이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사고과 및 승진에 반영 ② 급여인상 ③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 ④ 명예 ⑤기타	
A11	명장에 대한 학점인정 및 학점인정을 통한 학위 취득 시 이루어질 직종, 경력에 따라서 학점인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차등이 없어야 함 ② 경력에만 차등 적용 필요 ③ 분야에만 차등 적용 필요 ④ 경력별, 분야별로 모두 차등 적용 필요 ⑤ 기타 의견:	
A12	귀하는 명장과 학위를 비교할 때 사회적 인식과 가치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명장이 훨씬 높다. ② 명장이 높다. ③ 명장과 학위의 가치나 인식이 비슷하다. ④ 학위가 높다. ⑤ 학위가 훨씬 높다.	
A13	명장의 학점인정 및 이를 통한 학위 취득의 심사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 및 심사 시점	① 명장심사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② 명장심사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③ 명장 선정(신청 및 심사 포함)과 상관없이 별도로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신청 및 심사 횟수	①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 ② 연 2회 진행해야 한다. ③기타 의견:

A14	다음 중 명장 학점인정 및 학위 취득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공공분야 교육훈련 및 봉사 평가인정 확대 ② 자격증 학점인정 방식 도입(명장 분야를 포함한 소외 자격증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 도입) ③ 재직 중 연수 등을 비롯한 교육 관련 기관에서의 학습경험 학점인정 확대 ④ 학점이수 상시접수제 도입
A15	명장의 학위 취득 연계 시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명장 선정 직종 관련 직업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② 학점인정과 이를 통한 학위 취득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③ 명장의 교육훈련, 자격 및 현장경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강화해야 한다. ④ 교양 등 기초직업능력에 대해 별도 평가 또는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 ⑤ 기타 의견:
A16	귀하는 정부가 명장 학위 연계를 위해 선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국민 홍보 강화 ② 관련 법 개정 ③ 현장 실무경력 등 명장 선정 전후의 이력 누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④ 명장의 교육훈련비 및 프로그램 지원 ⑤ 학벌주의 중심의 시민의식 개혁 ⑥ 기업의 적극적 동참 유도
A17	명장 선정 전의 자격 취득 및 현장 실무 경력들을 학점으로 전환, 인정할 경우 명장 선정 전 몇 년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장 선정 전 년
A18	명장 선정 후의 자격 취득 및 현장 실무 경력을 학점으로 전환, 인정할 경우, 최근 몇 년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장 선정 후 최근 년
A19	시행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0	‘명장 선정만으로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A21	“명장의 학점인정 및 학위 취득은 결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개편된 자격종목에 한해서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감사합니다 ❍

[부록 2: 명장 대상 FGI 조사지]

‘대한민국 명장 학점인정 방안’ 연구 전문가 조사

‘대한민국 명장 학점인정 방안’연구는 교육부의 평생교육정책과 수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전문가 조사는 대한민국 명장의 학점인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입니다.

그간 명장의 교육훈련, 자격 및 현장 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 기관 및 명장 개인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 법령 중 학점은행제는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대한민국 명장은 명장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장에 대한 학점 인정과 학위 수여는 비교·평가 및 인정할 수 있는 전수교육과정이나 자격 출제 기준 등의 인정 체계가 없어 근거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전문가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타당성 있는 학점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 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모두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① 전문가(성명:)				② 기관(기관명:)			
연 령	( )세	성 별	□ 남 □ 여	전문 분야		경력연수	( )년

	문항	의견	
A1	귀하께서는 현재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형	① 기업체 소속근로자 (근무하시는 기업체 상시 근로자 수: 명) ② 사업체 운영 (운영하시는 기업체 상시 근로자 수: 명) ③ 자영업 운영 ④ 소속 없이 프리랜서 ⑤ 활동하지 않음 ⑥ 기타
		분야	① 사업관리 ② 경영·회계·사무 ③ 금융/보험 ④ 교육/자연 ⑤ 법률/경찰 ⑥ 보건/의료 ⑦ 사회복지·종교 ⑧ 문화예술·디자인 ⑨ 운전·운송 ⑩ 영업판매 ⑪ 경비·청소 ⑫ 숙박·여행·오락 ⑬ 음식서비스 ⑭ 건설 ⑮ 기계 ⑯ 재료 ⑰ 화학 ⑱ 섬유·의복 ⑲ 전기전자 ⑳ 정보통신 ㉑ 식품가공 ㉒ 인쇄·목재·가구·공예 ㉓ 환경· 에너지 ㉔ 농림어업
A2	귀하의 명장 선정 당시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2-3년제 ④ 전문대졸 ⑤ 4년제 ⑥ 대졸 ⑦ 석사 ⑧ 박사	
A3	귀하의 현재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2-3년제 ④ 전문대졸 ⑤ 4년제 ⑥ 대졸 ⑦ 석사 ⑧ 박사	
A4	귀하의 명장 선정 당시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 수는 몇 개였습니까? (운전면허증 제외)	① 기술사(개) ② 기능장(개) ③ 기사(개) ④ 산업기사(개) ⑤ 기능사(개) ⑥ 기타 (개)	
A5	귀하가 명장 선정 이후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 수는 몇 개입니까?(운전면허증 제외)	① 기술사(개) ② 기능장(개) ③기사(개) ④ 산업기사(개) ⑤ 기능사(개) ⑥ 기타 (개)	
A6	귀하의 명장 선정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A7	귀하가 명장으로 선정되기 전, 해당 분야의 경력은 몇 년 입니까?	년	
A8	귀하가 명장이 되기까지 준비한 기간은 몇 년 입니까?	년	
A9	명장 선정 전과 비교하여, 명장 선정 후에 더 많이 하시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분야 실무(경영 포함) ② 교육(전수) ③ 봉사 등 사회활동 ④ 연구개발 ⑤ 기타( )	
A10	명장 선정 후에 주로 하시는 활동의 1위부터 3위까지 순서를 적어 주십시오.	① 전문분야 실무(경영포함) ② 교육(전수) ③ 봉사 등 사회활동 ④ 도구개발 ⑤ 기타( )	

문항		의견
A1	귀하께서는 명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대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회적으로 매우 알려져 있으며 우대받고 있다. ②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대받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 ⑤ 사회적으로 매우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우대받지 못하고 있다.
A2	명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 및 사회적 활용을 제고하는 명장 개인의 경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① 교육, 봉사 기회 지속제공 ② 행·재정적 활동 (누적)관리, 발표 기회 제공 ③ 분야별 첨단·신기술 등 연수, 재교육 기회 확대 ④ 개인 차원 경력개발 경로 지원 ⑤ 기타 의견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견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는 명장이 산업체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A4	최근 조사에서 명장의 역할이 교육자·혁신자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명장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학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학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5	고졸 이하의 명장의 경우 고등교육 진입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정고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다른 방안이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A6</td><td>귀하는 명장에 대한 학점인정 및 학위 취득이 향후 명장의 처우, 명장 선정 이후의 경력개발 및 사회 환원 등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td></tr>
<tr><td>A7</td><td>명장선정 이후의 활동들을 누적·관리·지원 할 수 있는 운영체계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td></tr>
<tr><td>A8</td><td>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자격 등급별 인정학점
<table><tr><th>자 격 증</th><th>학 점</th></tr><tr><td>기술사</td><td>45 학점</td></tr><tr><td>변호사</td><td>45 학점</td></tr><tr><td>변리사</td><td>45 학점</td></tr><tr><td>기능장</td><td>30 학점</td></tr><tr><td>기사</td><td>20 학점</td></tr><tr><td>산업기사</td><td>16 학점</td></tr></table>※ 현행 학점은행제에서 자격 학점의 최대 인정 학점은 45학점임.
명장을 다른 자격과 비교하여 학점을 부여할 경우 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적절하지 않다면 몇 학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td></tr>
<tr><td>A9</td><td>명장 전문 분야에 대한 학점인정 이외에 일반 소양, 교양, 기초직업능력 등 관련한 추가 학점이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d>-교양 프로그램의 이수기간(시간):

-학점(또는 해당 교과목 개수):</td></tr>
</table>

							-이수방법(집체교육, 온라인 등 포함):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추가 학점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의견	
A10	귀하는 명장에 대한 학점인정이 도입되어 학위를 수여받는다면, 가장 크게 도움이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사고과 및 승진에 반영 ② 급여인상 ③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 ④ 명예 ⑤ 기타	
A11	명장에 대한 학점인정 및 학점인정을 통한 학위 취득 시 이루어질 직종, 경력에 따라서 학점인정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차등이 없어야 함 ② 경력에만 차등 적용 필요 ③ 분야에만 차등 적용 필요 ④ 경력별·분야별로 모두 차등 적용 필요 ⑤ 기타 의견	
A12	귀하는 명장과 학위를 비교할 때 사회적 인식과 가치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명장이 훨씬 높다. ② 명장이 높다. ③ 명장과 학위의 가치나 인식이 비슷하다. ④ 학위가 높다. ⑤ 학위가 훨씬 높다.	
A13	명장의 학점인정 및 이를 통한 학위 취득의 심사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 및 심사 시점	① 명장심사와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② 명장심사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③ 명장 선정(신청 및 심사 포함)과 상관없이 별도로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신청 및 심사 횟수	①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 ② 연 2회 진행해야 한다. ③ 기타 의견

A14	다음 중 명장 학점인정 및 학위 취득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공공분야 교육훈련 및 봉사 평가인정 확대 ② 자격증 학점인정 방식 도입(명장 분야를 포함한 소외 자격증에 대한 학점인정 방안 도입) ③ 재직 중 연수 등을 비롯한 교육관련 기관에서의 학습경험 학점인정 확대 ④ 학점이수 상시접수제 도입
A15	명장의 학위 취득 연계 시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명장 선정 직종 관련 직업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② 학점인정과 이를 통한 학위 취득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③ 명장의 교육훈련, 자격 및 현장경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강화해야 한다. ④ 교양 등 기초직업능력에 대해 별도 평가 또는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 ⑤ 기타 의견:
A16	귀하는 정부가 명장 학위 연계를 위해 선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국민 홍보 강화 ② 관련 법 개정 ③ 현장 실무경력 등 명장 선정 전후의 이력 누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④ 명장의 교육훈련비 및 프로그램 지원 ⑤ 학벌주의 중심의 시민의식 개혁 ⑥ 기업의 적극적 동참 유도
A17	명장 선정 전의 자격 취득 및 현장 실무 경력들을 학점으로 전환, 인정할 경우 명장 선정 전 몇 년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장 선정 전 년
A18	명장 선정 후의 자격 취득 및 현장 실무 경력을 학점으로 전환, 인정할 경우 최근 몇 년간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장 선정 후 최근 년
A19	시행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저자 약력

• 정향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대한민국 명장 학점인정 방안

• 발행연월일 2017년 12월 28일 인쇄
2017년 12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나 영 선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339–5260–1 93300
• 인 쇄 처 고려씨엔피 (02) 2277–1508~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값 4,000원〉

www.krivet.re.kr

값 4,000원

93300

9 791133 952601

ISBN 979-11-339-5260-1